

◎ 홍성의료원의료수가관리규정

제정(1983. 7. 1 규정 제1호) 개정(1995. 2. 13 규정 제24호)

개정(2006. 12. 29 규정 제58호) 개정(2016. 12. 30. 규정 제91호)

개정(2021. 12. 23 규정 제123호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충청남도 홍성의료원(이하 “병원”이라한다)에서 징수하는 의료수가 및 제사용 요금을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2006.12.29)

제2조(용어의정의) 본 규정에서 “의료수가 및 제사용 요금”(이하 “제요금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병원에서 징수하는 입원료, 약가, 수술료, 주사료, 검사료, 처치료, 진찰료, 방사선촬영료, 진찰료 및 동 진단료, 용기대, 부속시설사용료, 제증명수수료 등 진료행위 및 부대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수가를 말한다.

제3조(제요금의결정) ①제2조에 규정된 제요금은 당해연도의 원가계산과 물가지수 변동율에 의하여 발생하는 차액 등을 감안하여 그 연도의 제요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의료급여환자 및 건강보험환자의 진료수가는 정부에서 정한 진료수가 기준과 요양급여 기준과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다.

(개정2006.12.29)

②일반환자의 의료수가(“입원실료” 제외)는 보험수가의 140% 범위내에서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.

③입원실료(“기준병실료” 제외), 영안실사용료, 구급차사용료, 제증명수수료 등의 실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조(입원보증금) (삭제2006.12.29)

제5조(제요금의징수) ①제요금의 징수는 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징수하여야 하고 매월 5, 10, 15, 20, 25일 기준으로 중도금을 징수할 수 있다.

②퇴원, 사망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수할 수 있다.

③입·퇴원일의 입원실료는 오전12시로 하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규정에 의거 요금을 징수한다.(개정2006.12.29)

제6조(연대보증인의책임) 제 요금을 본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.

제7조(제요금의감면) ①원장은 다음 각호의 해당자에 대하여 제요금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.

홍성의료원의료수가관리규정

1. 사회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2. (삭제2006.12.29)
3. (삭제 2016.12.30.)
4.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외조부모 <신설 2016.12.30.>
5. 국가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, 범죄피해자, 지역소외계층, 무연고 환자 및 행려환자, 북한이탈주민, 가정폭력피해자로 원장이 합당한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(신설 2016.12.30.)(개정, 2021.12.23.)
6.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원 본인(신설 2021.12.23.)
②제1항 제1호의 제요금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에 의하여 이에 따른 입증서류서를 구비하여야 한다.

제8조(본원직원의공상치료) 본원 직원으로서 업무수행중 공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.

제9조(진료촉탁)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동차보험회사 기타 일반기업체의 장이 소속직원의 치료비를 후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촉탁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진료종료후에 해당기관장에게 제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10조(제증명수수료면제) 공공기관에서 직접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보험공단 등에서 병원에서 치료한 실적이 있는 환자의 치료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제증명수수료는 면제할 수 있다.

부 칙(규정 제1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규정 제24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규정 제58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규정 제91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규정 제123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2021. 11. 29.

2021년 4/4분기
홍성의료원 노사협의회 의결사항



- 충청남도 홍성의료원
-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홍성의료원지부

충청남도 홍성의료원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홍성의료원지부는 2021년도 4/4분기 노사협의회 협의 안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협의·의결하고, 상호 성실히 이행한다.

■ 의결 사항

1.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논의 건.

2018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제외 된 직원에 대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을 논의 · 결정한다.

2. 연차 사용 촉진 개선에 관한 건 .

2022년부터 연차사용 촉진을 50%로하고 7월 1일 개원기념일 정상근무와 8월 3일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오후 근무 할 경우 개원기념일은 1일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은 0.5일의 대체휴일을 부여하며 이외 사항은 기존 합의대로 시행한다.

3. 야간 전담직원 근무조건 개선 논의 건.

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 후 병원이 정상 운영 할 때 재논의 한다.

4. 진료비 감면 상향에 대한 건

2021년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합의에 따라 직원 및 가족(본인과 배우자의직계존비속)이 의료원을 이용 할 경우 입원과 외래진료 등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(급여와 비급여등 포함)의 50%를 감면하고 종합검진은 30%, 응급관리료는 현행 100%감면 혜택을 적용한다.

2021. 11. 29.

사측 대표

충청남도 홍성의료원
원장 박래경



노측 대표

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
홍성의료원지부장 양현웅

